

새로 개정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수출입 통합 공고 요지

정부의 수입정책 변경에 따라 원자력법 소관 품목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공부고시 제87-43호)에 의하여 당협회에 추천을 받아 수입하던 것을, 1988년 4월 1일부터는 통합공고 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88-13호, 1988. 3. 5, 표1. 참조)의 제84조(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입) 및 표2(품목별 수입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당협회에

「신고를 필한 후」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당협회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신고절차 및 요건확인 등에 관한 수출입신고 세부요령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곧 공고할 예정인바, 그 내용은 현행 원자력법상의 준수요건에 대한 사전 확인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표 1. 상공부고시 제88-13호

개정일 : 1988. 3. 15
시행일 : 1988. 4. 1

현 행	개	정
제8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입추천 대상자)별 표 II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수입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2.(생 략)	제84조(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입) (1) 별표II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입대상자 및 요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좌 동)	
3. 방사성동위원소	3. (좌동)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동법 제67조, 제70조, 제72조에 의한 시설검사합격, 보안규정승인,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 다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내장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는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및 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승인,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수입신고를 필한 후에 규정된 기간 내 시행할 수 있다.	
4. 방사선 발생장치	4. (좌동)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자 또는 이들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자. 다만, 장치의 일부로서 수입하거나 차폐지역 또는 차폐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밀폐장치로 주문 제작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및 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승인,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수입신고를 필한 후 규정된 기간내에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2) 원자력법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시설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승인,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당해 수입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위탁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2. 품목별 수입요령

HS No.	품 목	수 입 요 령	
		현 행	개 정
284440. 1000 2000 3000 9000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분산물 기 타	1. 한국방사성동위원회장의 요 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당없음 가. (생 략) 나. (생 략) 2. 방사성의약품은 한국 방사성동위 원소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회 협회에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수 있음 다만 해당없음 가. (좌 동) 나. (좌 동) 다. 방사성의약품 (삭 제)
320650. 0000	무기의 루미노페	1. 다음의 것은...요건확인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무기의자발...착색제) (1) (생 략) (2) (생 략)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후 수 입할 수 있음. (좌 동) (1) (좌 동) (2) (좌 동)
902219. 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9) (생 략)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료용중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1)....(9) (좌 동) (상기 902219. 1000 수입 요령과 동일)
902219. 2000 9000	공업용의 것 기 타	1. 한국방사성동위원회장의 추 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902229. 1000	물리 또는 화학 시험용의 것.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902229. 2000	공업용의 것	가. (생 략) (1)....(10) (생 략) 나. (생 략) (1)....(6) (생 략) 다. (생 략) (1)....(16) (생 략)	가. (좌 동) (1)....(10) (좌 동) 나. (좌 동) (1)....(6) (좌 동) 다. (좌 동) (1)....(16) (좌 동)
902290. 1010	엑스선발생기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9) (생 략)	1. 다음의 것은 요건확인을 거쳐 ...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1)....(9) (좌 동)
902290. 1020 1030	엑스선용의 스 크린 엑스선용의 고압발생기	1. 한국방사성동위원회장의 추 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원자 력법)	(삭 제) (삭 제)
1090	기 타		
9000	부분.....속품		
902610. 1000 2000 9000	유량계 액면계 기 타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생 략)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1) (좌 동)
902620. 1110 1120	액체형의 것 금속형의 것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放射線, 水素 attack, 脱炭, σ 相의 折出, 불립 (tempering) 脆化, 擴散 및 結晶粒粗大 등을 計測하여 定期 定檢과의 관련을 생각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한다.

(2) 運轉中の 檢查

設備를 運轉하고 있는 동안에 檢查한다는 것은 效率를 올리기 위해서도 工業經濟上 重要한 問題이다. 그러나 安全上 여러가지 制約을 받기 때문에 適用할 수 있는 方法이 限定되어 있다.

① 地盤狀況의 計測

비에 의한 地盤의 流失,沈下 등을 測定하여 필요하면 補修를 지시한다.

② 內容物의 누설 計測

內容物이 가스 또는 液體인 경우에는 이것에 적합한 누설檢知器를 設置하여 항상 檢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설이 檢知되었을 때는 基準에 따라 措置한다.

③ 環境에 대한 計測

소음 및 廢ガス, 廢水의 擴散 등, 大衆生活에 惡影響을 미치는 事象을 計測하여 超過하지 않도록 措置한다.

④ 균열成長速度의 計測

定期検査時에도 균열깊이를 測定해야 하지만 使用中에도 可能한 方法으로 外部에서 균열成長度를 測定한다. 만약 危險性이 있다고 생각되면 運轉을 停止하여 措置를 해야 한다.

III. 맷는 말

歐美에 實在하는 第3者 檢查機關을 본따서 檢查

〈18페이지로 계속〉

1900	기 타 .	(1) (생 략)	(좌 동)
9000	기 타		
902680.1000	열측정계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2000	풍력계	(1) (생 략)	(1) (좌 동)
9000	기 타		
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902810.2000	검사용계기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20.2000	검사용계기	(생 략)	(1) (좌 동)
30.2000	검사용계기		
90.0000	부분……속품		
903010 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1. 다음의 것은…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1)……(11) (생 략)	1. 다음의 것은…신고를 필한 후 수 입할 수 있음. (1)……(11) (좌 동)

機關의 理想像을 그려보았지만, 이것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國內의 諸制度의 改革, 關係機關과의 交流, 關聯業界와의 協議 등 解決해야 할 많은 問題가 山積하여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여러 問題를 하루라도 빨리 解決해 나가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弟3者 檢查機關은 先進國과 마찬가지로 民間機關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民間機關이라야 가장 效率있게 安全性을 確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安全性에 대한 信賴性과 經濟性은 競爭의 原理에 따라 닦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官主導의 獨尊物로 되면 權力이 살아나서 法的으로 嚴格한 強制檢查가 되어 技術과 經濟性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에서 第3者 檢查機關은 原則的으로 複數存在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競爭市場은 國際的인 것이라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와 같은 檢查機關이 日本에도 생긴다면過去처럼 不正한 檢查는 사라지고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檢查가 탄생할 것이며, 쓸데없는 檢查도 없어지고 品質保證體制도 高度化할 것이고 檢查技術者의 地位도 向上될 것이다. 또 國家의 行政組織도 簡素化되어 工業施設의 安全性에 대한 信賴性도 民間 및 國際間에도 增大하여 安全性에서 오는 트러블도 激減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第3者 檢查機關의 탄생을 희망하는 것이다.

(日本非破壊検査協議誌, Vo.32, NO.5, P.415(1983)
에서 발췌)

(現, 日本大學校 教授, 日本工業検査技術協会 会長)